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0. 4. 20

나. 제출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0. 4. 2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2000. 4.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이경섭)

가. 제안이유

- 부천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도시가스 수요자에게 저리대출을 통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가구당 지원비를 증액 현실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함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용자(안 제3조)
 - 기금적립금 외에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용자할 수 있음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할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 용자의 조건(안 제9조)
 - 대출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함
- 기금분임운용관 삭제(안 제14조)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시급고로 지정된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7호
의결년월일	2000. 5. 3 (제78회)

제출년월일 : 2000. 4. 20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천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도시가스수요가에 저리대출을 통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 가구당 지원비를 증액 현실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조성된 기금을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예치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범위를 시와 금고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함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금용자(안 제3조)
 - 기금적립금 외에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융자할 수 있음
- 기금의 용도(안 제5조)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 용자의 조건(안 제9조)
 - 대출한도액을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함
- 기금분임운용관 삭제(안 제14조)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시금고로 지정된 안전하고 이자수익률이 높은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 운용·관리한다.(안 제3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금융기관”를 “시금고”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관리 시금고는 예치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용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융자한다. 다만,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시금고의 자체자금을 도시가스수요가에 융자할 수 있다.

제4조 중 “기금”을 “도시가스수요가 시설자금”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비

제8조제1항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절차(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필증제출 및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여부 확인)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시금고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확인 절차를 거쳐 용자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의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금융기관”을 “시금고”로 한다.

①대출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하 “2세대 이상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주에 대하여는 10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 중 “금융기관은”을 “시금고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기금”을 “용자금”으로, 제1항 중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의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금융기관은”을 “시금고는”으로 “기금”을 “용자금”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1호 및 제4호의 “기금”을 “용자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변경상의 통보”를 “변경사항의 통보”로 하며, “금융기금”을 “시금고”로 한다.

제13조 중 “금융기관은”을 “시금고는”으로 하고, “기금”을 “용자금”으로 한다.

제14조 중 “가스업무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가스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를 “가스업무담당과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p>	<p>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관리) ①.....<u>시금고</u> (이하 “<u>시금고</u>”이라 한다).....</p>

